

# 서울특별시

우 100 - 744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31번지

(02) 750 - 8402

FAX : (02) 773 - 7905

문서번호 농축 27030-103

시행일자 1993. 1. 28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취급		시 장	
보존			
농축과장	전 결		
유통계장			
기안	박 광 필		
		협조	

제 목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및 품목 고시

1. 농축 27030-20(92.1.8)호및 시장방침 제93호(93.1.27)와 관련 입니다.
2.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 추세에따라 국내 과일농민을 보호하고 제도권 시장의 활성화  
오와 삼장경매 제도의 정착, 수입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92. 1. 8 고시한 일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재고시 하였  
는바
3. 각 구정에서는 산지및 수입 바나나와 파인애플이 적반입되어 거래되는 사례가없도록 홍보  
활동및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고시품목의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기 바라며
4. 각 지정도매 법인및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고시품목의 전량 삼장경매 실시로 공정거래가  
확립될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수산물 거래제한및 품목고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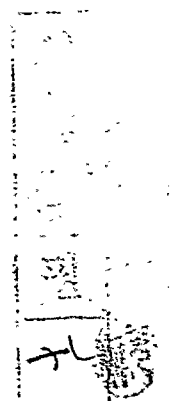
- 품 목 : 바나나, 파인애플(2종) 국내산포함
- 가 간 : '93. 2. 1 ~ '93. 12. 31
- 지 역 : 서울시 전 지역
- 내 용 : 고시품목은 도매시장 또는 농산물공판장의 유통과정을 거치지 아니 하고는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매수행위 금지.

정 부 : 농산물 거래제한및 품목고시 1부 끝

## 서울특별시 장

수신처 : 서구01-22(산업과장),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공사,

한국, 중앙, 동화, 서울, 동부, 서울수산정교(주), 정랑리, 영등포 농산물 공판장



농축 27030- 173

(제 2 안)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농산물 거래제한및 품목고시 통보(보고)

1. 외국 농수산물의 수입개방화 추세에따라 국내 과일농민 보호와 제도권시장의 활성화및 상장 경매제도의 정착, 수입농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92.1 8일 고시한 일부 수입농산물에 대하여 농수산물 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재고시 하였음을 통보(보고)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가. 농산물 거래제한및 품목고시 현황

제1안 제5항 "가"호 이기 시행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처 : 농림수산부 장관(시상과장), 중법업증소업 승방외 외상

(제 3안)

수 신 : 공보2담당관

제 목 : 신문 게재(보도)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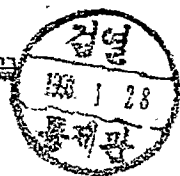
1. 시장방침 제93호(93.1.27)호와 관련 입니다.
2. 별첨과 같이 농산물 거래제한및 품목고시 현황을 신문게재(보도) 코자 하오니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게재내용 : 농산물 거래제한및 품목고시

나. 고시기간 : '93. 2. 1 ~ '93. 12. 31

다. 게재신문 : 시보및 2개 일간지(조간1, 석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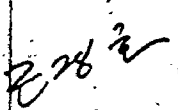



첨 부 : 고시문 5부 끝




## 농 축 과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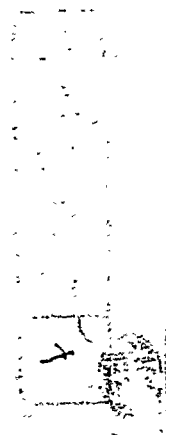
# 主要輸入農産物 去來制限告示

0093  
결재  
1990. 1. 27  
시장

農畜課長	産業經濟局長	副市長	市長
			

法務擔當官 

農 畜 課



# 主要 輸入農産物 去來 制限 告示

## 1. 目 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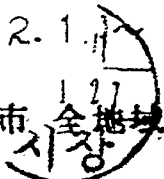
輸入 農産物의 法定 都賣市場의 義務的 經由로 類似市場 中心去來에 따른 不公正 去來를 防止하여 輸入을 抑制, 國內 農産物을 保護하고 上場 競賣制度를 定着 시키고자 함.

## 2. 方 法 : 去來制限 告示

가) 根 據 : 農安法 第36條 (去來의 制限) 및 同法 施行令 第20條의2

나) 品 目 : 바나나, 파인애플 ( 2種 )      國內産 포함

다) 期 間 : '93. 2. 1. 12. 31.

라) 地 域 : 서울<sup>127</sup>市  全地域

마) 制 限 內 容

○ 告示 地域內에서 告示된 品目の 去來는 法定 都賣市場 또는 共販場에서 上場競賣를 通하여 出荷된 商品으로 制限하며 이 過程을 거치지 않고 出荷된 商品은 去來를 制限

바) 去來品目 表示

○ 法定都賣市場 및 共販場에서 上場 競賣된 品目에 대하여 去來 確認書 發給 및 表示

사) 告示(案) : 別添

아) 告示方法

○ 市報 掲載 및 日刊紙(2個 日刊紙) 告示

○ 告示文 揭示 : 都賣市場 및 類似市場 周邊, 多衆 集合場所等

자) 行政事項

○ 分野別 擔當部署 指定

部署別	推 進 事 項	備 考
市(農畜課) 區 廳 管理 公社 指定都賣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總括指導, 制限告示</li> <li>· 類似 都賣行爲 圖東</li> <li>· 告示文 揭示</li> <li>· 上場 競賣制度 施行</li> <li>· 青果法人, 共販場 指導監督, 仲買人, 賣參人 指導監督</li> <li>· 上場 競賣制度 施行<sup>??</sup></li> <li>· 去來品目 表示( <u>인쇄</u> 捺印 및 去來 確認書 發給) 仲買人, 賣參人, 競賣士 指導 監督</li> </ul>	新聞公告

※ 責任 部署別 細部 推進計劃 樹立 施行

○ 告示文 揭示

- 各 區廳長은 告示文을 많은 市民이 볼수있는 場所에 揭示 (告示文 別添)

○ 去來品目 表示 (樣式 別添)

- 法定 都賣市場과 農協 共販場은 去來 確認書와 發給台帳을 備置

· 包裝 商品

┌ 上品別 包裝紙에 去來 確認(스탬프) 表示

└ 去來 確認書 發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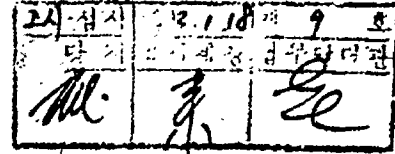
· 非 包裝 商品 : 去來 確認書 發給

- 管理公社 및 指定 都賣人은 仲買人, 競賣士의 指導監督을 철저히 하여 違法去來 行爲가 發生치 않도록 措置
- 去來 制限告示 履行 與否 團束 強化
  - 合同 團束班 編成 運營
    - . 市·區 合同 團束 : 月 1回 以上 또는 수시
    - . 區( 區·洞職員, 警察 ) : 月 1回 以上 또는 수시
  - 團束時間 : 區廳에서 現況 把握後 自體調查( 晝·夜 團束)
  - 團束對象 : 在來市場, 類似市場, 大型 流通業體(百貨店, 수퍼등)
  - 違反者 措置 : 行政處分 또는 告發
  - 啓導活動 併行 : 案内文 配布, 現場 指導등
- 報告事項
  - 管理公社, 指定 都賣人: 去來制限 品目 上場現況 提出
  - 區 廳
    - . 團束職員 名單 報告 (區別 2名)
    - . 團束對象 業體 (市場, 大型 流通業體등) 名單 提出
    - . 團束實績 報告 (每月 25日 限)

1장

Handwritten notes and stamps on the right side of the page, including a circular stamp at the bottom right.

< 별첨 1 (고시) >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93-18호



## 농수산물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 고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령 제2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농수산물 거래제한지역 및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993. 2. 1

서울특별시 장

### 1. 거래제한 지역 및 품목, 기간

지 역	품 목	기 간
서울특별시 전지역	과실류(2종): 바나나, 파인애플	1993.2.1 ~ 12.31

### 2. 거래제한 사유

- 농수산물 거래질서 확립으로 <sup>주버과일</sup>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3. 거래제한 내용

- 고시 품목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sup>상</sup> 소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청량리 동부청과 주식회사, 노량진 서울수산청과 주식회사 ) 또는 농산물 공판장 ( 신촌, 중부, 청량리, 영등포, 가락동 농협공판장 )에서 상장 경매를 거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

### 4. 거래품목 표시

- 지정 도매인과 농수산물 공판장은 상장품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 확인 또는 표시를 하여야 함( 양식 별첨 )

- ┌ 포장 상품 : 거래확인서 발급 및 거래표시( 스탬프식 )
- └ 비포장상품 : 거래확인서 발급

### 5. 벌 칙

- 위의 고시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